

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영은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·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“문화재지킴이” 정의 (안 제2조)
  -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
- 도지사의 책무 및 추진계획, 협력체계 구축 (안 제3조~제5조)
- 홍보 및 교육, 포상 (안 제7조~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민간차원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와 향토문화의 계승·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,
  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문화재 홍보·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였고, 또한, 시군 개인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였음.
  -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행·재정적 지원과 문화재지킴이의 활동 및 관련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문화재지킴이의 교육실시와 문화재 보호 활동 우수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 
- 금번 조례안은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

여 도내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. 끝.